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
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전문위원 노형우

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전 원 표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건설기계는 공영주기장의 부재로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주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, 이로 인한 교통혼잡, 소음 등 고질적인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바, 개정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(안 제3조)

다.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·군에 대한 공영주기장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함.(안 제4조)

라.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교통혼잡, 소음 등 고질적인 주민피해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「건설기계관리법」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도지사 및 시장·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된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4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군에 대한 공영주기장 설치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함.
 - 안 제5조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1. 5.20.~'21. 5.2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수용” 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